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928번
- 제 안 자 : 최유희 의원(찬성자 27명)
- 제 안 일 : 2025년 8월 11일
-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의 대응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계획 수립 주기가 3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상시 운영 필요성이 낮음.
- 실제로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2023년 1회에 그쳐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 해촉 관련 조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대체 가능하므로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안 제45조제1항)
- 위원 해촉 조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적용 가능하므로 삭제(현행 제46조제7항)
- 안전 발생 시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안 제47조제2항)
-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4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8.20.~8.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상시 운영 필요성이 낮고 실제 회의 실적이 저조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비상설 전환
 -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안 제45조제1항).
 - ▶ 위원 해촉 조항 삭제(현행 제46조제7항).
 - ▶ 안전 발생 시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안 제47조제2항)
 - ▶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49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구성('13.2.20.)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 인권에 관한 인권종합계획 수립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대응 방안을 심의하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 위원회 비상설 단서 신설 및 위원의 임기 규정 개정 (안 제45조제1항, 제46조제5항~제6항)

- 안 제45조제1항은 단서를 신설(안전 발생시 구성,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여 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안 제46조제5항은 기존 위원의 임기 규정(현행 제46조제5항 및 제6항)을 당초 2년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개정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현행 제46조제6항)과 위원의 해촉 규정(현행 제46조제7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① 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중요 정책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대응방안을 심의하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단서 신설></u> ②·③ (생략)	제45조(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① ----- ----- ----- ----- ----- ----- ----- <u>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⑤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⑥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⑦ <u>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u>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u>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u>	제4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u> <u><삭 제></u> <u><삭 제></u>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 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사람	

- 본 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중요 정책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대응방안을 심의하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본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연 평균 2회 미만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의 정비 권고*(위원회 설치시 비상설 운영 원칙, 비효율 위원회의 정비 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안 제45조제1항)를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임기 및 해촉 규정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운영 실적 〉

연도	일자	참석	회의안건
20	10. 20.	12명	○ 3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20.~' 22)수립 관련 서면심의
21	5. 18.	16명	○ 4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서면자문
	12. 8.	13명	○ 2021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 운영 실적보고 ○ 2021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용역) 관련 영상회의 및 서면자문
22	3. 25.	10명	○ 2021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용역) 결과 보고
	12. 6.	10명	○ 2021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문항 추가 및 보완사항
23	12. 13.	9명	○ 2023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심의·자문 ○ 2023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용역) 중간보고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요약

※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정비방향, 1페이지)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3년간 미개최	⇒ 폐지
		1년간 미개최	⇒ 정비계획 수립 또는 활성화
	비효율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전)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전少) 비상설화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정비대상은 아니나, 필요할 경우 행안부 및 소관 부처로 법령 정비요청(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설 운영이 원칙이나, 위원회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바, 개최가 적을 정도로 위원 회의 기능(현행 제45조제2항)이 미미한지, 평생교육국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개최 의지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45조(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어린이·청소년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시장의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어린이·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시행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그 밖에 시장, 시민인권보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전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7.24.>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전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또한, 본 위원회 비상설화로 인해 중대 인권침해 사안(현행 제45조제2항제3호) 발생 시 위원회 구성 시간이 소요되어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에 따라 시장이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연도별 시행계획*(현행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추진에 있어 일관성·연속성 결여 및 장기적 추진 사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인권처럼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에서 본 위원회의 비상설화는 인권 현황 평가 등 예방적 논의가 줄어들어 위원회의 기능이 사후 대응 중심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6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결론적으로 상설위원회는 안전성과 감시 기능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회의 실적 부진 시 유명무실화하거나 형식화될 단점이 있고, 비상설위원회는 유연성과 효율성에 장점이 있는 반면 지속성과 집행기관의 자의적 운영에 따른 책임성 부족이 단점인바, 본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할지 비상설로 운영할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상설위원회 및 비상설위원회 비교표 〉

구분	상설위원회	비상설위원회
설치 목적	특정 분야 정책을 상시적으로 심의·자문	특정 현안·과제를 한시적으로 해결
운영 기간	지속적·정기적 (해산 전까지 존속)	임시적·한시적 (안건 처리 후 해산)
장점	-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 정책 기억(memory) 축적 -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견제 가능 - 시민 참여의 제도화, 민주성 강화	- 신속·탄력적 운영 가능 - 특정 현안 집중 검토에 유리 - 필요할 때만 운영 → 자원 절약 - 기구 난립 방지
단점	- 회의 실적 부진 시 유명무실화 가능 - 관행화·형식화 우려 - 인적·재정 자원 분산 - 집행부 부담 증가	- 지속성 부족, 전문성 축적 한계 - 정책 감시·견제 기능 약화 - 집행부 자의적 운영 가능성 - 후속관리·책임성 미흡

○ 안 제46조제7항은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해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향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다루는 본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해촉 기준 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5.1.3〉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12. 31.〉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2) 위원회 회의운영 방법 변경(안 제47조제2항)

- 안 제47조제2항은 본 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을 변경(위원장이 소집 → 시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요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전 발생 시 시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삭 제>
2. 임시회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삭 제>

- 본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경우 안전 발생 시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안 제47조제2항) 회의소집 및 회의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안전 발생 시 ‘즉시’ 소집이 아닌 시장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폭력 피해 조사나 정책 개선 권고 등 응급 인권 사안 대응이 늦어질 우려는 없는지, 평생교육국의 판단에 따라 소수자 인권 관련 안전 등 민감한 안전에 대한 본 위원회 소집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운영세칙 (안 제49조)

- 안 제49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본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하던 것을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u>	제49조(운영세칙) ----- ----- ----- <u>시장이</u> <u>운영세칙으로 정한다.</u>

- 본 위원회의 비상설화 맥락에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본 위원회는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제도적·자율적 운영 등을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경우 정치적 편향이나 행정 편의가 반영되어 본 위원회의 중립적

심의, 인권보호적 관점의 심의 등이 제약받을 위험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 법 조 사 관	채 태 준
---------	-------	-----------	-------